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아 사교육비 조사 근거 마련 〉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58호)

2025. 1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유아 사교육비 조사 근거 마련	2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0. 28.

3. 회부연월일 : 2025. 10.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유아 단계에서 조기 사교육이 확산되면서 유아의 발달을 저해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이는 초·중·고등학교로까지 이어져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실시와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영유아기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4항·제21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1. 유아 사교육비 조사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보호자에게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부장관은 유아 대상 사교육 실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제고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u> <u>② 교육부장관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u>

<u>제21조의5</u>(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생략)	<u>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1조의6</u>(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현행 제21조의5와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나. 검토의견

□ 현행 「유아교육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3조¹⁾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유치원의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조기 사교육의 확산으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고 있고, 사교육비 부담 가중 및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유아 시기부터 시작된 사교육이 이후 초·중·고등학교 교육에까지 이어져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보호자에게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부장관에게는 유아 대상 사교육 실시 및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1)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①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 한편, 정부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추진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07년도부터 매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함께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참고 1: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개요 >

-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는 「통계법」 제17조²⁾에 의한 지정통계로 통계청 주관하에 교육부의 협조를 얻어 전국의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연 2회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공표를 통해 사교육비 연간 총액 규모,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등을 밝히고 있음. < 참고 2: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개요 >

- 2024년 실시한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는 「유아교육법」 제3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³⁾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유아교육발전

2)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1. 전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통계
2.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
3.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
4.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5. 그 밖에 지정통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통계

3) 「유아교육법」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내용 등)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유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유아교육 대상자 현황
2. 지역별·유형별 유치원 분포 현황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교육부는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통계대행 기관으로 통계청을 선정('23. 8. 29.)하고, 업무협약(통계청, '24. 3. 26.)을 통해 조사를 시행하였음.

- 다만,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는 2017년도 이후 두 번째 시행한 것으로 시험조사는 통계작성 대상이나 절차 또는 방법 등의 적합성 및 타당성, 오차의 발생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조사로 본조사와 다르게 조사의 품질이 담보되지 않고, 공표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음.⁴⁾

□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제4항을 신설하여 '보호자에게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 해소와 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휴식, 여가, 놀이 등에 대한 아동의 권리 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3. 유치원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원아 정원 및 현원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유아교육 지원 현황

6. 그 밖에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4) 본조사는 「통계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한 조사로서 **조사품질이 담보되어 공표가 가능하나, 시험조사는 「통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정부 또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또는 사후 확인과정에서 통계작성대상이나 절차 또는 방법 등의 적합성 및 타당성, 오차의 발생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조사로서 대외공개 목적이 아님**

또한, 개정안 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신설은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교육부장관의 실태조사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동 조사의 실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조사 결과의 활용을 통해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현행법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⁵⁾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의 경우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실시주기와 공표여부는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실시주기와 공개여부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현행법상 실태조사 현황]

구분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제3조의2)	교육통계조사 (제6조의2)
목적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을 위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주기	<u>5년</u> 마다 실시(제4항) ※ 기본계획 수립 주기 5년	<u>매년</u> 실시(제1항)

5) 「유아교육법」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원생·교원·직원·유치원·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로 수집된 자료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 ⑧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과공개 여부	공개 의무 명시(제4항)	공개 의무 명시(제1항)
조사범위, 방법 등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대통령령 위임사항	· 조사내용(지역별 유아교육 대상자, 유치원 분포, 교원 및 직원, 원아 정원 및 현원 등) · 방법[원칙 표본조사, 필요시 전수 조사] · 공표(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 조사내용(유치원의 명칭·종류·소재지·시설 등 현황, 유치원 원생 및 졸업생, 교원 및 직원, 교육행정기관의 직원 및 재정) · 방법[정기조사(매년 4월 1일, 10월 1일 기준, 수시조사)] · 공표(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등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로 통계청 주관하에 교육부의 교육 행정체계를 활용하여 조사하고 있으므로 향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연계하여 지정통계로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내실있는 정책추진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유아 사교육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므로 이견이 없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92

□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개요

- (조사대상) 6세 미만 취학전 영유아* 가구 부모
*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영유아, 가정양육 영유아
- (조사규모) 13,241명 ○ (조사대상 기간) '24. 7 ~ 9월(3개월)
- (유의사항) 본조사는 시험조사이며, 7~9월(3개월) 사교육비용, 참여에 관한 연간
화되지 않은* 등 미승인 통계로 자료 이용·해석에 유의 필요
* 조사대상월 이외 월의 사교육비를 추정하지 않고, 조사대상 월만을 대상으로 통계 작성

□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 요약

【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 】

- (총액) 3개월(7~9월) 사교육비 총액 8,154억원
- (참여율·시간) 사교육 참여율 47.6%, 참여유아 기준 주당 참여시간 5.6시간
- (1인당) 사교육 참여유아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3.2만원
※ 전체유아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5.8만원
- (수강목적) 예체능 및 기타 과목은 재능개발 및 진로탐색(60.3%), 일반과목
및 논술과목은 입학 준비(67.6%) 비중이 높음

① 7~9월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원, 사교육 참여율은 47.6%, 주당 참여시간은 5.6시간으로 기관 재원 유아 3.7시간, 가정양육 유아 15.2시간

- (7~9월 사교육비) 총 8,154억원, 기관재원 4,671억원, 가정양육 3,483억원
이며, 2세이하 858억, 5세 3,519억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
- (사교육 참여율) 47.6%, 기관재원은 50.3%, 가정양육 37.7%이며 2세 이
하는 24.6%, 5세는 81.2%로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율 증가
- (주당 참여 시간) 5.6시간, 기관재원은 3.7시간, 가정양육은 15.2시간이며 2세
이하 1.8시간, 5세 7.8시간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시간 증가

【 사교육비 이용 총액 및 참여율 】

구분	전체	기관유형별				연령별			
		기관 재원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 양육	2세 이하	3세	4세	5세
사교육비 총액(억원)	8,154	4,671	1,869	2,802	3,483	858	1,325	2,452	3,519
참여율(%)	47.6	50.3	37.9	71.8	37.7	24.6	50.3	68.9	81.2
참여시간	전체	2.7	1.8	1.1	3.1	5.7	0.5	2.6	4.4
	참여	5.6	3.7	2.9	4.3	15.2	1.8	5.2	6.4

② 사교육 참여 유아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2만원으로, 예체능 및 기타 과목은 월 평균 17.2만원, 일반과목(국·영·수 포함) 및 논술과목은 월평균 34만원

- (과목별 1인당 사교육비) 예체능은 취미·교양(12.7만원), 체육(12.7만원), 음악(12.2만원), 일반과목은 영어(41.4만원), 사회·과학(7.9만원), 논술 등(7.5만원) 순
- (수강목적) 예체능 및 기타 과목은 재능개발 및 진로탐색(60.3%), 감수성함양(50.1%), 사회성발달(23.8%), 일반과목은 입학준비(67.6%), 재능개발 및 진로탐색(53.8%), 불안심리(41.0%) 순

③ 가정양육 유아 17%가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에 참여하고,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 이용 총액(3개월)은 2,668억원, 참여유아 기준 월 평균 비용은 145.4만원

-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 유형 중 영어학원 월평균 비용이 154.5만원

【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 유형별 참여유아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 】

(단위:만원)

구분	전체	유형별				
		영어학원 유치부	예능학원	놀이학원	체육학원	기타
참여유아 기준	145.4	154.5	78.3	116.7	76.7	74.7

*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25.3.13.자) 참고

1. 조사목적

- ☐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하여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추진에 활용할 기초자료 제공

2. 조사연혁

2007년	▶ 사교육비실태조사 최초실시 : 교육인적자원부와 MOU체결(12월) - 연간 2회 조사: 1차(7월), 2차(10월, 사교육의식조사 병행)
2008년	▶ 통계명칭 변경: 사교육비실태조사 → 사교육비조사
2009년	▶ 시도 단위 결과공표를 위한 표본 확대 - 273개 학교 34,000명 → 1,012개 학교 44,000명
2010년	▶ 인터넷조사 시험조사 (6월, 10월)
2013년	▶ 인터넷조사 전면 실시(인터넷조사: 목표 응답률 90%, 실적 93.3%)
2014년	▶ 교육부와 공동통계 작성승인 - 통계청·교육부 공동작성통계 승인 (2014. 01. 22.) ▶ 세종시 추가공표 (전국 16개 시도→17개 시도)
2015년	▶ 사교육의식조사를 사교육비조사에 통합하여 조사
2016년	▶ 통계명칭 변경: 사교육조사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 초등학교 내 여러 학년 추출방지로 표본학교 수 증가(1,244개→1,483개)
2017년	▶ 조사체계 일원화(조사와 입력내용검토 단계를 지방청 직원으로 일원화)
2018년	▶ 담임교사 성적조사방법 변경(초·중학교 미실시, 고등학교만 조사-현행)
2019년	▶ 1·2차 동일 표본에서 독립표본으로 변경 - 학생수 감소 추세 보완 위해 표본 학급수 확대(1,491개 학급→3,108개 학급)
2020년	▶ 코로나19로 인한 통계작성방법 한시적 변경 - 연간통계 → 조사대상기간통계
2021년	▶ 조사대상기간통계를 연간통계로 작성(2020년 소급적용)
2024년	▶ 조사표 명칭 변경: 방과후학교 →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3. 법적근거

- ☐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
-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승인번호 제920011호, 2007. 06. 01.)

4. 조사대상

- ☐ 조사단위 : 개인
- ☐ 조사대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초중고 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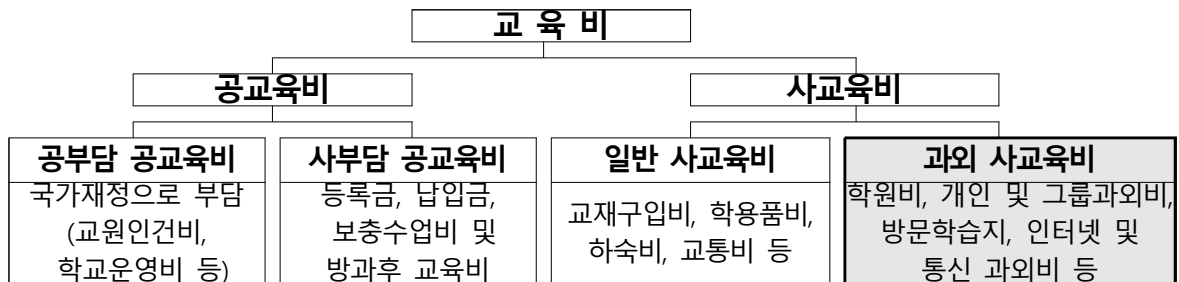
5. 사교육비 개념 및 조사 범위

☐ 사교육비 개념

-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 조사 범위

- 사교육비(학교 외 보충교육비)
 - 개인과외, 그룹과외, 학원수강, 방문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의 수강료(교재비 포함)를 의미하며, 일반교과 및 논술, 예체능 및 기타(취미·교양), 취업목적, 진로·진학 학습상담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비용, EBS 교재비 및 어학연수 비용 등
 -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활동비, EBS 관련 교육비(교재구입비)는 사교육비 경감 효과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사교육비와 분리하여 별도 항목으로 조사
 - 어학연수비는 수업료뿐 아니라 체재비, 항공료 등을 포함하여 별도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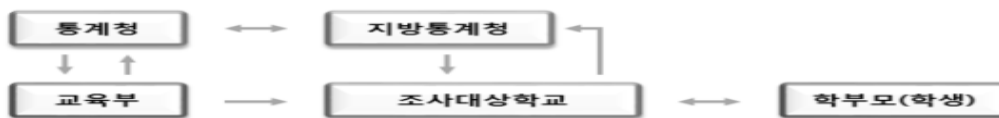
6. 조사체계

☐ 통계청 주관으로 교육부의 교육 행정체계를 활용한 조사

- 교육부는 각 표본학교에 조사협조 공문 발송 및 학교별 사교육비조사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 조사협조 체계 구축

교육부(표본학교 공문 발송 등) → 통계청 (조사) → 통계청·교육부 (결과공표)

☐ 통계청-교육부 간 조사체계도



7. 소요예산(통계청)

- ☐ 2025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예산 : 1,558백만원
 - 3032-304(사회통계작성) : 546백만원
 - 3037-309(통계조사지원, 통계조사답례품) : 1,012백만원

* 자료: 2025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종합실시계획(안), 2025. 4월, (통계청·교육부) 참고